

의안번호	제 70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369 회)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0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자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 위원 수를 조정함

2. 주요내용

- 자문단 위원 수 조정 : 100명 이내 → 200명 이내(안 제3조제1항)
-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정(안 제6조제1항)
 - 분과위원회 세분화 (2분과 → 4분과)
 - 복지·여성분과위원회 → ‘복지’, ‘여성·청소년’
 - 바이오·환경분과위원회 → ‘바이오’, ‘환경·산림’
 -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(2분과)
 - 문화·관광분과위원회 → ‘문화·관광·체육’
 -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→ ‘균형발전’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불 임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문·협의”를 “자문·협의 요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포함란 100명”을 “포함한 200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
2. 공공혁신분과위원회
3. 복지분과위원회
4. 경제분과위원회
5. 농·어업분과위원회
6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
7. 균형발전분과위원회
8. 바이오분과위원회
9. 환경·산림분과위원회

제9조 중 “제8조”를 “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도정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<u>자문·협의</u>에 따른다.</p> <p>1~4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문·협의 요청</u>-----.</p> <p>1~4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<u>포함한 10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 <u>포함한 200명</u>----- ----- --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2. <u>복지·여성분과위원회</u> 3. <u>문화·관광분과위원회</u> 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5. <u>바이오·환경분과위원회</u> 6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7. <u>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 	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</u> 2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3. <u>복지분과위원회</u> 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5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6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7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

현행	개정안
<p>8. (신설)</p> <p>9. (신설)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9조(수당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8조</u>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8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</p> <p>9. <u>환경·산림분과위원회</u>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8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시,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더하고,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

3. 관련조문

- 제9조(수당)
 -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200명, 워크숍(연1회)·포럼(연1회)·현장방문(연2회) 개최
- 다. 추 계 결 과 : '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00,000천원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
세 출	40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도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	40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
※ 연간 소요비용 : 80,000천원 (운영수당 45,000천원, 워크숍비용 35,000천원)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재영